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34
----------	-------

발의연월일 : 2026. 1. 2.

발 의 자 : 백선희 · 황운하 · 박희승

정준호 · 황명선 · 서왕진

김준형 · 정춘생 · 이해민

손명수 · 한창민 · 최혁진

이수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징계처분 등을 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사·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2항 본문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징계권자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참모총장, 대장급 사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 7명
2. 장성급 군단장·사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의 장: 5명
3. 연대장·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명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장교
2. 인사·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생략)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 -----3 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징계권자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신 설>	1.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 참모총장, 대장급 사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 7명
<신 설>	2. 장성급 군단장 · 사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명
<신 설>	3. 연대장 ·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명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u><신 설></u>	<u>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서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u> <u>1. 장교</u> <u>2. 인사·감사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